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:소사근린공원)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11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9. 11. 3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99. 11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가. 제안이유

○ 당초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를 제척하고 인근 산채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함.

○ 변경 주요내용

구분	지번	면적 증·감(m ²)	변경사유	비고
계	7필지	증 399		
1	괴안동 85	증 88	기존 아파트 조성부지	제척
2	괴안동 산14	감 232	"	"
3	괴안동 산14-3	증 60	공원조성에 따른 잔여지 매수	편입
4	괴안동 산16-9	증 60	산채로 확보	"
5	괴안동 산16-10	증 509	"	"
6	괴안동 산16-12	감 316	도로(소3-542)편입면적 중복지정	제척
		증 114	산채로 확보	편입
7	괴안동 산16-24	증 30	공원조성에 따른 잔여지 매수	편입
구적오차로 인한 면적정정		증 262		정정

나. 주요골자

- 공원조성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를 제척(320m²)하고 인근 산책로 추가확보 및 구적오차 면적정정 등 확대지정(증 399m²)하여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함.

다.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척되는 지역이 각각 무슨 용도로 제척되는 것인가? 도시계획시설 용도는? ○ 소사근린시설의 변경으로 민원발생은 없는가? ○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예산액은? ○ 사업기간이 2000년 6월까지로 변경결정이 되어 공사시에는 동절기로 이 기간 안에 준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공기를 연장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로 제척하는 것임. ○ 인근주민들이 오히려 원하고 있는 사항임. ○ 토지매입 보상비 4000만원과 공사비 3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이 더 소요됨. ○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찬성의견서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8. 첨부서류

- 의견서 1부.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:소사근린공원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

의안번호	236	안건명	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:소사근린공원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
제출자	부천시장	의결 년월일	제7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(99. 11. 12)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 : 소사근린공원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

소사근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는 제척하고, 시민이 보다 더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토지 일부를 편입하여 공원인근을 산책로로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999년 11월 12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:소사근린공원)변경결정안

의안번호	제236호
의결년월일	99. 11. 12 (제74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당초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를 제척하고 인근 산책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함.

○ 변경 주요내용

구분	지 번	면 적 증·감(m ²)	변 경 사 유	비 고
계	7필지	증 399		
1	괴안동 85	증 88	기존 아파트 조성부지	제척
2	괴안동 산14	감 232	"	"
3	괴안동 산14-3	증 60	공원조성에 따른 잔여지 매수	편입
4	괴안동 산16-9	증 60	산책로 확보	"
5	괴안동 산16-10	증 509	"	"
6	괴안동 산16-12	감 316	도로(소3-542)편입면적 중복지정	제척
		증 114	산책로 확보	편입
7	괴안동 산16-24	증 30	공원조성에 따른 잔여지 매수	편입
구적오차로 인한 면적정정		증 262		정정

□ 주요내용

- 공원조성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를 제척(320㎡)하고 인근 산책로 추가확보 및 구적오차 면적정정 등 확대지정(증 399㎡)하여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함.

□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공원:소사근린공원)변경결정안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:소사근린공원)변경결정안

구분	시설명	세부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	당초	증·감	변경	
변경	공원	소사근린공원	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4-2번지 일원	18,500	증 399	18,899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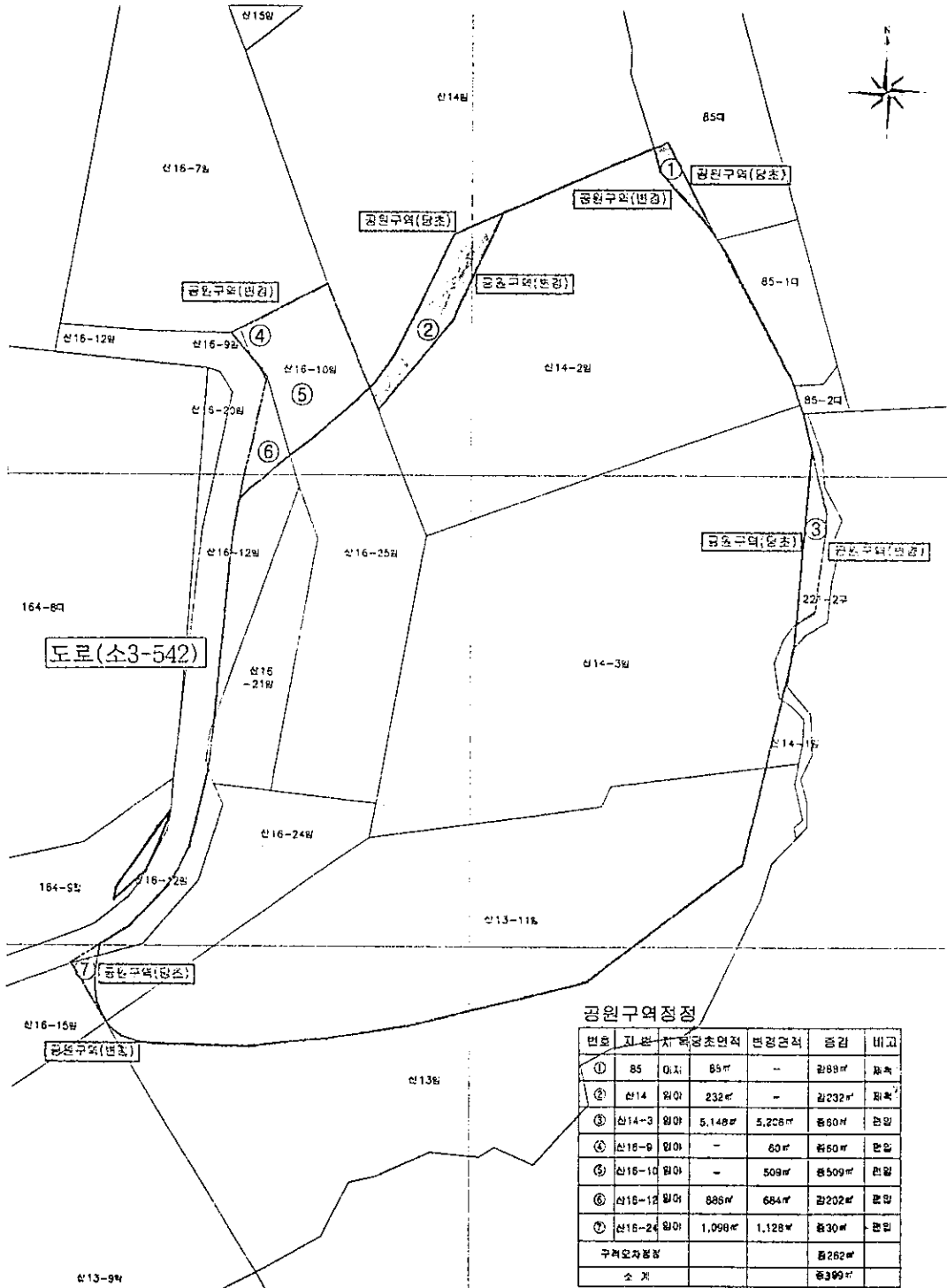
□ 변경결정사유

- 공원조성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조성부지를 제척하고 인근 산책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함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
- 추정사업비 : 24억 3000만원(보상비 : 14억 6000, 용역비 : 1억, 시설비 : 8억 7000)
 - ※ 99. 4회 추경 15억 6000만원 예산확보
- 사업기간 : 99.~2000. 6
-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: 1996. 11. 7(건설부 고시 제508호)
- 주민의견 청취결과
 - 공람공고
 - 제1회 경도일보 : 1999. 10. 7~10. 22(14일 간)
 - 제2회 수도권일보 : 1999. 10. 7~10. 22(14일 간)
 - 제출의견 : 의견제출자 없음
-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: 1999. 10. 26(원안가결)
- 결정권자 : 경기도지사

공원(소사근린공원)변경 현황도



S=1:1,200

공원구역 정정 현황도